

심 의
사 항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주 민 조 례 청 구 수 리 여 부 심 의 의 건

제출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의장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

제출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의장

1. 제안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1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05조에 따라 청구요건을 심의하여 청구 수리 여부의 결정을 구함.

2. 청구개요

가. 청구 조례명: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례안」

나. 청구인 및 대표자: 오세권, 안언주 (경북 구미시 흥안로)

다. 청구이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찍어야 함에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정당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 하여 법적 원칙을 회복하고자 함.

라. 필요 연서 주민 수: 4,862명(청구권자 총수 1/70)

마. 서명인 수: 12명

3. 추진일정

가. 주민조례청구(안) 청구: '26. 3. 24.

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26. 4. 15.

다. 서명요청기간: '26. 4. 16. ~ 7. 29. ※ 3개월(선거기간 제외)

라. 청구인명부 제출: '26. 7. 30. ※ 기한 만료 후 5일 이내

- 명부 제출 기한: '26. 8. 3.

- 서명인 수: 12명 (서명인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로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절차 생략)

마.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26년 10월 중

4. 검토사항

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해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유효 서명인 수 충족 여부: 미충족

○ 필요 서명인 수: 4,862명 ※ 구미시 공고 제2026-60호

구분	18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B)	청구권자 총수(A-B)	서명인 수	비고 (비율 산정시)
	계(A)	내국인	외국인				
구미시	340,719	340,304	415	429	340,290	4,862	1/70

○ 유효 서명인 수: 12명

5. 참고사항

가. 청구 조례안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다. 2026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문

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청구 조례안

□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명시된 사전투표 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을 구미시 관내 사전투표 현장에서 실현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미시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호와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접 날인”이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인장을 인쇄물이 아닌 실제 인장으로 직접 찍어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은 구미시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날인 원칙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력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무의 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직접 날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직접 날인 업무를 전담할 보조 인력의 확보 및 투표소별 배치 지원
직접 날인 공정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장비 지원 및 장소 제공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 참관인 활동 지원 및 관련 홍보 사업

제5조(법령 정비 건의 등) 시장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쇄 날인 관행 개선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구미시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05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을 말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 ③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